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재정부, 세무총국**  **증치세 소규모납세자에 대한 증치세 면제 정책을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공고**  재정부, 세무총국 공고 2021년 제11호  영세기업의 발전을 한층 더 지지하기 위해,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에 대한 증치세 면제 정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. 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월 매출액이 15만위안 이하(본수 포함)인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에 대해 증치세를 면제한다.  <영세기업에 대한 포용성 조세 감면정책 실시에 관한 재정부, 세무총국의 통지>(재세[2019] 13호) 제1조는 동시에 폐지된다.  위와 같이 공고한다.  재정부  세무총국  2021년 3월 31일 |  | **财政部、税务总局**  **关于明确增值税小规模纳税人免征增值税**  **政策的公告**  财政部、税务总局公告2021年第11号    为进一步支持小微企业发展，现将增值税小规模纳税人免征增值税政策公告如下：  自2021年4月1日至2022年12月31日，对月销售额15万元以下（含本数）的增值税小规模纳税人，免征增值税。  《财政部、税务总局关于实施小微企业普惠性税收减免政策的通知》（财税〔2019〕13号）第一条同时废止。  特此公告。  财政部  税务总局  2021年3月31日 |